

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633호 2017. 9. 1.(금)

【조 례】

【규 칙】

제525호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

【훈 령】

제266호 공주시 우수중소기업 인증제 운영 규정 13

【예 규】

【공 고】

제2017-1513호 소하천(능골천 외 1개소)정비 시행계획(변경) 공고 22

【고 시】

제2017-146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29

제2017-147호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31

제2017-148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33

제2017-149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35

제2017-151호 보물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 고시 36

제2017-152호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행정협의회 규약 고시 47

회 람							
--------	--	--	--	--	--	--	--

발행 공주시 (편집 미디어담당관 ☎ 840-2052)

《 시 보 발 행 안 내 》

본 「시보」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및 공주시보 발행규정에 의거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정 및 개·폐사항, 인사, 공고, 고시, 의회의 집회, 개회, 휴회 및 회기의 연장, 의사내용 등을 게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매월(1일, 15일) 2회 또는 수시 발행되오며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배부는 시산하 행정기관 및 이·통장님에게 배부됩니다.
이·통장님께서서는 본 「시보」에 게재된 내용을 이웃 등에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별도 편철 하시어 1년 동안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8회 공주시 조례규칙심의회(2017. 8. 16.)에서
의결된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2017년 9월 1일

공주시 규칙 제525호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항 중 “관련 업무담당주사가”를 “관련업무 팀장이”로 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관련업무 담당주사가”를 “관련업무 팀장이”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 수요처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주교육지원청, 공주경찰서, 공주선거관리위원회 및 공주우체국 등 관내의 공공기관

제9조제1항제2호 중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관내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로, “대학교 등”을 “대학교 등 교육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의 인증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주시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담당자 실무자 교육’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이하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이라 한다)의 수요처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시장은 수요처 현장확인 보고서를 작성하고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인증기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자원봉사 시간관리 및 인정기준) 자원봉사 시간 관리 및 인정기준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13조(보험가입 절차)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는 ‘1365 자원 봉사 나눔포털’에 등록을 하고, 센터에서는 그 사항을 확인하여 보험 등에 가입 한다.

② 시장은 센터에서 보험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험가입 지원절차 및 보상 등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14조의 제목 “(실비보상과 활동경비지원)”을 “(실비보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6과”를 “별표 4와”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간병서비스 지원) 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서 간병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간병서비스 이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병서비스는 1명 당 연 100시간(하루 최대 8시간) 범위에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간병서비스 1시간 당 봉사활동 실적시간의 5시간이 차감 된다.

③ 간병서비스 지원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요양보호사 간병서비스 급여에 준한다.

④ 간병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간병서비스가 종료된 뒤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간병서비스 비용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간병서비스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의 간병서비스 비용 청구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인정

시간 여부등을 확인하여, 빠른 시일 내에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를 “센터는”으로, “갖추어 두어야”를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관리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과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와 별표 6을 삭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 서식부터 별지 제6호 서식까지를 삭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공주시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보수지급기준
(제4조제3항 관련)

구 분	센 터 장	사무국장	팀 원
인 건 비 기 본 급	공무원 5급 대우	공무원 6급 대우	공무원 8급 대우

- ※ 코디네이터 급여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 시행지침에 의함.
- ※ 신규 임용의 경우 1호봉을 원칙으로 함
- ※ 센터장이 무보수 비상근으로 근무할 경우 실비변상의 직급보조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 그 외의 사항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의한다.

[별표 4]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과 활동경비 지급기준
(제14조 제2항 관련)

구 분	지 급 기 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또는 센터에서 주관하는 일반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단체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사시간 : 1일 4시간 이상 · 교통비 : 1일 5,000원 이내 · 급식비 : 1식 8,000원 이내(1일 3식이내) · 활동경비 : 최소 활동용품비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또는 센터에서 주관하는 업무보조 및 재난재해 전문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사시간 : 1일 8시간 이상 · 교통비 : 1일 5,000원 이내 · 일비 : 1일 10,000원 이내 · 급식비 : 1식 8,000원 이내(1일 3식이내) · 활동경비 : 최소 활동용품비만 지원

[별지 제1호 서식]

간병서비스 이용 신청서				
	구 분	소 속	성 명	
	간병지원		생년월일	
신청서 비 스	마일리지제 운영현황	간병지원		
		봉사활동누적시간	차감시간	
		잔여시간		
	서비스이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시간)		
	신 청 사 유			
<p>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간병서비스를 신청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대리신청인) 성 명 : (서명)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인 경우)</p> <p>공주시자원봉사센터장 귀하</p> <p>첨부 의사진단서 1부(간병서비스 신청서)</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 ⑦ (생략)</p> <p>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원봉사 관련 업무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자원봉사 <u>관련 업무담당주사</u>가 된다.</p> <p>⑨ · ⑩ (생략)</p> <p>제3조(센터의 기구와 정원) ①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공주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센터의 기구와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공주시 직영의 경우 자원봉사관련업무 부서의 장이 센터장이 되고, 사무국장은 자원봉사 <u>관련업무 담당주사</u>가 된다.</p> <p>② (생략)</p> <p>제9조(자원봉사활동 수요처 인증) ① <u>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공주시 주관 자원봉사담당자 실무자 교육을 이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u></p>	<p>제2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p> <p>⑧ _____ _____ _____ <u>관련업무 팀장이</u> _____.</p> <p>⑨ · ⑩ (현행과 같음)</p> <p>제3조(센터의 기구와 정원) ①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u>관련업무 팀장이</u> _____.</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자원봉사활동 수요처 인증) ① <u>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 수요처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u></p>

는 공주시 관내 기관 및 시설에서 수요처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면 수요처 현장 확인 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고, 인증 여부를 통보할 수 있다.

1. 교육지원청, 경찰서, 선거관리위원회 및 우체국 등 공공기관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
3.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
<신 설>

② (생략)

제10조(자원봉사 시간관리 및 인정기준 등) 자원봉사 시간 관리는 별표

할 수 있다.

1. 공주교육지원청, 공주경찰서, 공주선거관리위원회 및 공주우체국 등 관내의 공공기관
2. 「사회복지사업법」 -----

3. 관내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 대학교 등 교육기관
② 제1항의 인증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주시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담당자 실무자 교육’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의 수요처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시장은 수요처 현장확인 보고서를 작성하고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인증기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0조(자원봉사 시간관리 및 인정기준) 자원봉사 시간 관리 및 인정기

4와 같고, 인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3조(자원봉사 보험가입 등)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보험가입 대상은 센터 포털시스템에 보험 가입을 신청하여 승인된 자원봉사자 중 1회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한 사람으로 한다.

② 센터장은 지역내 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많은 분야의 자원봉사자를 우선 가입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14조(실비보상과 활동경비지원) ① (생략)

② 실비보상과 활동경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생략)

<신설>

준은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13조(보험가입 절차)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는 ‘1365 자원봉사 나눔포털’에 등록을 하고, 센터에서는 그 사항을 확인하여 보험등에 가입 한다.

② 시장은 센터에서 보험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험가입 지원절차 및 보상 등은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14조(실비보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별표 4와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간병서비스 지원) 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서 간병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간병서비스 이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병서비스는 1명 당 연 100시간(하루 최대 8시간) 범위에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간병서비스 1시간 당 봉사활동 실적시간 5시간이 차감 된다.

소기업 중 3년 이상 운영되는 중소기업으로서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생산성 기술력을 갖추고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기업을 말한다.

4. “공주시 우수 중소기업 인증제”란 제3호의 우수중소기업 중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중소기업을 발굴 인증함으로써 기업 성장을 돕기위하여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우수중소기업 인증절차 등) ① 우수중소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별지 서식의 우수 중소기업 인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제3항의 평가 기준 및 절차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을 인증하되, 사전에 공주시 우수 중소기업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인증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인증을 받은 기업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제4조(우수중소기업 지원) 시장은 우수중소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 할 수 있다.

1. 우수 중소기업 인증서 및 인증패 교부
2. 우수 중소기업 홍보
3.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 지원사업의 우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우수중소기업 인증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공주시 우수 중소기업 인증위원회(이하“인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우수중소기업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우수중소기업 지원의 자문에 관한 사항
3. 우수중소기업의 사후 관리에 자문 사항
4. 우수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자문 사항
5. 그 밖에 우수 중소기업의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② 인증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안전산업국장으로 한다.

③ 인증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시 기업경제과장
3. 기업지원 관련 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기업관련 분야 연구 전문가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전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전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건강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기업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인증위원회는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자,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인증의 유효기간)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

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인증 유효기간 만료기업에 대해서는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를 거쳐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13조(인증의 취소)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참여기업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할 경우
3. 우수 중소기업 지정 후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거나 합병 된 기업
4. 불법부당 기업경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기업
5.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제14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업 공고를 준용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기업규모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증가율
매출액				
총자산				
자본금				
상시종업원수				
수출액(직+간접)				
매출 대비 수출비율(%)				

- 수출액은 4.항목 참고 기재

3. 주요 거래처(전년 매출기준)

거래처명	○○○	○○○	○○○	○○○	합
매출 비중	%	%	%	%	100 %

예) 삼성 50%, LG 30%, 기타 20%

* 주요거래처 : '16년 기준 매출 비중 상위를 차지하는 주요 거래처 명과 매출 비중을 기재

- 비율의 합은 100%가 되도록 작성하며 상위 3개 거래처를 제외한 나머지는 기타로 분류

4. 매출구성

(단위 : 억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증가율
매출액(A)				
내수				
수출	직수출(B)			
	기타(C)			
직수출비중(B/A)				
총수출비중((B+A)/A)				

- 수출실적은 직수출과 기타 수출(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로 구분하여 작성 (해당없을 경우 기재하지 않음)

* 직수출 실적은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증명된 실적

*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은 주거래 외국환은행장이 발행한 증명서로 확인되는 실적

- 증가율은 최근 3년('14~'16년)간 CAGR 값

*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은 여러해 동안의 성장률을 평균으로 환산한

것으로 매년의 성장률을 산술평균이 아닌 기하평균한 값
 : '14~'16년 3년간 연평균 성장률 = $(2016\text{년도 매출액}/2014\text{년도 매출액})^{(1/3)} - 1$

5. 재무현황

신용평가 등급

연 도	2014 년	2015 년	2016년
신용등급			

* 신용평가기관 : ()

*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 및 신용평가기관 명기

-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받지 않은 경우, 국채금융기관 또는 시중은행 평가신용등급 활용 가능

영업이익률

(단위 : 억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증가율
매 출 액(A)				
영업이익(B)				
영업이익률(B/A)				

* 영업이익률(%) = $\text{영업이익}/\text{매출액} \times 100$

부채비율

(단위 : 억원,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증가율
부 채(A)				
자기자본(B)				
부채비율(B/A)				

* 부채비율(%) = $\text{부채}/\text{자기자본} \times 100$

유동비율

(단위 : 억원,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증가율
유동부채(A)				
유동자산(B)				
유동비율(B/A)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x 100

6. 대표이사 및 임원경력

대표이사 주요 경력	▪ ▪	임 원(2명 이내)	
김철수	▪ ▪	이영희	▪ ▪

7. 대표 제품(기재할 제품이 많을 시 표를 추가하여 작성)

1	제품명		품목구분	
	출시일		16년 매출액	
	제품 경쟁력 및 장점	▪ ▪ ▪		제품사진

8. 지식재산권(발명특허, 실용신안, 의장, 규격)출원.등록 현황

구 분	명 칭	발명자	국 명	출원일	출원번호	등록일	등록번호	공동출원 기 관

9. 정부부처 포상 및 시상 현황

구 분	종 류	발행처	일 자
정부포상			
정부시상			

10. 기타, 증빙자료

소하천(능골천 외 1개소) 정비 시행계획(변경) 공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포함]

공주시 공고 제2017-1513호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2항,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17년도 소하천(능골천 외 1개소) 정비시행계획(소규모 환경영향평가포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께서는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아래 기간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1일

공 주 시 장 (직인)

소하천 명	사 업 개 요									비 고
	공사명	공사 위치		사업량(m)			공사기간		공사 목적	
		시작하 는 지점	끝나는 지점	축제 (築堤)	호안 (護岸)	기타 (橋梁)	착공	준공		
능골천	능골 소하천 정비사업	신평면 봉갑리 451	신평면 봉갑리 476-20	2,274	2,084	교량 4개소	2017. 03	2018. 12	소하천 재해 예방	
구자골 소하천	구자골 소하천 정비사업	정안면 어물리 308	정안면 어물리 321	1,375	611	합성형 라멘교 1개소, BOX 개가설 3개소	2017. 03	2018. 12	소하천 재해 예방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7. 09. 01. ~ 2017. 09. 15.(14일간)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공주시청 안전관리과 하천시설팀 (☎041-840-8668)
 신평면 산업개발팀, 정안면 총무팀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1식

- 능골 소하천 정비사업 세부 정비시행계획 -

1. 소하천 정비공사의 명칭

- 능골 소하천 정비사업

2. 소하천 정비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능골천은 제방단면이 부족하고 호안이 노후되어 홍수시 제방에 세굴이 발생하여 인근 농경지 침수 등의 손해가 발생됨에 따라 기수립된 공주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의거한 소하천계획법선에 맞춰 제방 보축 계획을 함에 있어 부득이하게 제내지측 농경지를 편입하게 되나, 하천개수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재해 예방을 통한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치수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나. 사업의 개요

- 사업량 : 축제 L=2,274m, 호안 L=2,084m
- 사업비 : 2,677백만원
-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봉갑리 451 번지 ~ 476-20 번지 일원

3. 소하천 정비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명칭 및 주소

- 시행자 : 공주시장(안전관리과장)
-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4. 소하천 정비공사의 착공 및 준공예정 연월일

- 2017년 3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24개월)

5.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붙임” 참조

6. 준공된 소하천 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관리자 : 공주시장(안전관리과장)

7. 발생 예상 폐천부지(廢川敷地)의 면적

- 해당없음

8. 실시설계도서

- 별첨 설계도서 참조

9. 소하천 정비공사 시행지역의 위치도



10. 예정 공정표 :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4개월로 한다.

구 분	보할 (%)	공사기간						비고
		4개월	8개월	12개월	16개월	20개월	24개월	
축 제 공	9	4	4	1				
호 안 공	45		12	14	13	6		
구조물공	8			2	4	2		
교 량 공	31		15	16				
포 장 공	1					0.7	0.3	
부 대 공	6	1	1	1	1	1	1	
월별진도	100	5	32	34	18	9.7	1.3	
누계진도		5	37	71	89	98.7	100	

11.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금액:백만원)

사업명	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비고
능골 소하천 정비사업	3,350	600	1,300	1,450	

12. 하천공사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계획

가. 편입토지 및 물건조서 : 붙임 참조

- 보상계획 공고 : 공주시 공고 2017-52호(2017. 01. 13.)

나. 보상시기 및 절차

- 보상시기 : 2017년 1월 ~
- 보상절차 및 방법 : 공주시 안전관리과에서 소유자와 계약 체결 후 지급
- 보상가액산정 : 보상가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가액에 산술 평균치

13. 기타사항

기타 공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공주시청 안전관리과 하천시설팀 (☎041-840-866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자골 소하천 정비사업 세부 정비시행계획 -

1. 소하천 정비공사의 명칭

- 구자골 소하천 정비사업

2. 소하천 정비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본 사업은 공주시 정안면 어물리에 위치한 구자골 소하천 정비를통 하여 집중 호우, 우기시 원활한 유수의 흐름을 유도하여 하천 유역의 영농편익과 농지 및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사업의 개요

- 사업량 : 축제 및 호안 L=1,986m
- 사업비 : 3,300백만원
-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어물리 308번지 ~ 321번지

3. 소하천 정비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명칭 및 주소

- 시행자 : 공주시장(안전관리과장)
-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4. 소하천 정비공사의 착공 및 준공예정 연월일

- 2017년 3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24개월)

5.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붙임” 참조

6. 준공된 소하천 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관리자 : 공주시장(안전관리과장)

7. 발생 예상 폐천부지(廢川敷地)의 면적

- 해당없음

8. 실시설계도서

- 별첨 설계도서 참조

9. 소하천 정비공사 시행지역의 위치도



10. 예정 공정표 :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4개월로 한다.

구 분	보합 (%)	공사기간						비고
		4개월	8개월	12개월	16개월	20개월	24개월	
축 제 공	9	4	4	1				
호 안 공	45		12	14	13	6		
구조물공	8			2	4	2		
교 량 공	31		15	16				
포 장 공	1					0.7	0.3	
부 대 공	6	1	1	1	1	1	1	
월별진도	100	5	32	34	18	9.7	1.3	
누계진도		5	37	71	89	98.7	100	

11.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금액:백만원)

사업명	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비고
구자골 소하천 정비사업	3,300	600	1,300	1,400	

12. 하천공사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계획

가. 편입토지 및 물건조서 : 붙임 참조

- 보상계획 공고 : 공주시 공고 2017-52호(2017. 01. 13.)

나. 보상시기 및 절차

- 보상시기 : 2017년 1월 ~
- 보상절차 및 방법 : 공주시 안전관리과에서 소유자와 계약 체결 후 지급
- 보상가액산정 : 보상가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가액에 산술 평균치

13. 기타사항

기타 공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공주시청 안전관리과 하천시설팀 (☎041-840-866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시 신축 건물 및 도로명 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08. 18.

공주시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동학사1로 209-8 외 30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과(☎840-8480)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7. 08. 1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세부내역

순번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자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자	도로명부여사유	공적장부 주소전환 계획
1	충청남도 공주시 공학동 201-11	충청남도 공주시 공신로 97-6 (중학동)	2018.08.18	20100202	20100202	지역특성 반영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2	충청남도 공주시 중동 193-1, 193-4	충청남도 공주시 경영길 17 (중동)	2018.08.18	20100112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3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동 147	충청남도 공주시 서어골1길 104-6 (웅진동)	2018.08.18	20100112	20100112	자연마을 명칭과 일련번호 정식 복합 반영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4	충청남도 공주시 주미동 184-3	충청남도 공주시 열골길 7-37 (주미동)	2018.08.18	20100112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5	충청남도 공주시 주미동 155-1	충청남도 공주시 주미중앙로길 5 (주미동)	2018.08.18	20100112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 활용 후, 이후 지리교 송백동는 도로 명칭 명칭지정기 위해 명칭 부여 명칭을 활용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6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597-14	충청남도 공주시 전악3길 6 (신관동)	2018.08.18	20100112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7	충청남도 공주시 송선동 222-25, 222-46, 222-51, 222-57	충청남도 공주시 병머리1길 77-11 (송선동)	2018.08.18	20100112	20100112	누예를 많이 치던 곳이라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8	충청남도 공주시 송선동 222-60	충청남도 공주시 병머리1길 77-13 (송선동)	2018.08.18	20100112	20100112	누예를 많이 치던 곳이라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9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화정리 266-3, 269-3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위동길 27	2018.08.18	20100112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10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남산리 781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벽골길 47-85	2018.08.18	20100112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11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거산리 1031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디라골중앙길 184-79	2018.08.18	20100112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 활용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12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월암리 163-8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월암중앙길 78	2018.08.18	20100112	20100112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13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640-1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유신길 98-6	2018.08.18	20100112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14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510-1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102	2018.08.18	20100202	20100202	반포초등학교를 지나는 길이라 하여 반포초교길로 부여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15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513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109	2018.08.18	20100202	20100202	반포초등학교를 지나는 길이라 하여 반포초교길로 부여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16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 593-1, 592-1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용출중앙로 829	2018.08.18	20100112	20100112	내룡리의 해안 용출구 구항-중랑의 장악교를 관통하는 도로로, 용출중앙로라고 부여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17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700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동학사1로 209-8	2018.08.18	20100112	20100112	지역특성과 일련번호 정식 복합 반영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18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수촌리 936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신촌길 149-12	2018.08.18	20120106	20120106	해당 수촌리를 신촌이라 불렀다 하여 옛 명칭을 활용하여 신촌길로 부여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19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유계리 186-2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우당골길 38	2018.08.18	20100112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20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평창리 442-4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성정안동막길 114	2018.08.18	20100112	20100112	성정안면 마을로 부속리인 부 대동마을 부속리인 도로로 부 지리교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하여 성정안동막길로 부여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21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평창리 202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평창길 196-10	2018.08.18	20100112	20100112	행정구역 명칭 반영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22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우곡리 634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은학동길 65-25	2018.08.18	20100112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23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장현리 211-6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장현길 313	2018.08.18	20100112	20100112	장현리를 관통하는 주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장현길로 부여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24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대산리 27-4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정안마곡사로 35	2018.08.18	20100112	20100112	정안면에서 마곡사를 향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과 마곡사의 명칭을 활용하여 정안마곡사로 부여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25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방탄리 57-7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차동로 679-84	2018.08.18	20090825	20090825	예산군과 공주시 경계에 위치한 고개 이름 사용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26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상서리 950-3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옥성길 484-70	2018.08.18	20100112	20100112	옥성리 전체를 관통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 활용하여 부여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27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내산리 45-2, 46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무성산로 272-30	2018.08.18	20100112	20100112	내산리에서 무성산, 내산리, 무성산으로 관통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무성산로 부여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28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한천리 175-15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무성산로 787	2018.08.18	20100112	20100112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29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반촌리 67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동곡길 1-23	2018.08.18	20100112	20100112	동곡리를 관통하는 주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동곡길로 부여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30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호계리 244-10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로 77-2	2018.08.18	20100112	20100112	마곡사를 향하는 길이라 하여 마곡사로로 부여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31	충청남도 공주시 신봉면 백항리 19-34	충청남도 공주시 신봉면 차동로 1791-25	2018.08.18	20090825	20090825	예산군과 공주시 경계에 위치한 고개 이름 사용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우리시 도로명주소 부여건물 중 도로명 주소 변경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08. 18.

공주시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철목길 2-5 외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과(☎840-8480)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7. 08. 1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세부내역

중간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사항		공적장부 주소전환 계획	비고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일자	변경사유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상서리 439-2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상서리 439-7, 706-1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절목길 2-5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절목길 2-5	2017.08.04	관련지번 정정 및 추가	고시후 공란 발송 예정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방문리 690, 687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방문리 687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방문한적골길 43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방문한적골길 43	2017.08.17	건물번호 분할에 의한 관련지번 정정	고시후 공란 발송 예정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방문리 690, 687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방문리 690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방문한적골길 43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방문한적골길 41	2017.08.17	건물번호 분할에 의한 관련지번 정정	고시후 공란 발송 예정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시 건물등의 멸실에 따라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및 제25조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08. 18.

공주시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유산길 98-6외 13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과(☎840-8480)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7. 08. 1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등에 의거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세부내역

중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일	폐지사유	비고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640-1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유산길 98-6	2017.08.18	신축에 의한 건물말소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한천리 175-15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무성산로 787	2017.08.18	신축에 의한 건물말소	
충청남도 공주시 중학동 201-11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로 97-6	2017.08.18	신축에 의한 건물말소	
충청남도 공주시 중동 191-7, 193-1, 193-4	충청남도 공주시 제민천3길 52	2017.08.18	신축에 의한 건물말소	
충청남도 공주시 중동 193-4, 193-1, 193-2, 193-5	충청남도 공주시 감영길 17	2017.08.18	신축에 의한 건물말소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597-14	충청남도 공주시 전막3길 4-1	2017.08.18	신축에 의한 건물말소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동 147, 산29-1	충청남도 공주시 시어골길 104-6	2017.08.18	신축에 의한 건물말소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동 371-1	충청남도 공주시 해지개길 21-2	2017.08.18	주차장 조성에 의한 건물말소 허가과43701공문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동 371-2	충청남도 공주시 해지개길 21-3	2017.08.18	주차장 조성에 의한 건물말소 허가과43701공문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동 371-3	충청남도 공주시 해지개길 21-5	2017.08.18	주차장 조성에 의한 건물말소 허가과43701공문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동 371-5	충청남도 공주시 해지개길 19-8	2017.08.18	주차장 조성에 의한 건물말소 허가과43701공문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동 373-3	충청남도 공주시 해지개길 21	2017.08.18	주차장 조성에 의한 건물말소 허가과43701공문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동 373-4	충청남도 공주시 해지개길 19-6	2017.08.18	주차장 조성에 의한 건물말소 허가과43701공문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동 373-2	충청남도 공주시 해지개길 19-4	2017.08.18	주차장 조성에 의한 건물말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아 래 -

지구명	위 치	해 제 내 용			해제사유	비고 (지정일자)
		유형	등급	면적(m ²)		
태봉천 재해위험지구	국도40호 ~ 검상천 합류부	침수위험	나	90,000	하천정비 사업완료	2006.3.2.

붙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도면 1부 (안전관리과 비치)

2017년 9월 1일

공 주 시 장

보물 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 고시

- 공주시 고시 제2010-123호(2010.01.28)로 보물농공단지 준공 공고된 보물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19조에 의거 보물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공주시 기업경제과(041-840-829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17년 9월 1일

공 주 시 장

1. 농공단지의 명칭 : 보물 농공단지(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

- 시행자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사업시행자 : 공주시 - 당초

에터미(주), 홍삼단(주), (주)홍삼단 - 변경

※ 준공된 농공단지로 당초 사업자인 (주)룩평이 청산 완료되어 산업단지 관리가 공주시로 이관 되었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사업의 목적 : 농공단지 개발
- 사업의 개요
 - 시행방법 ⇨ 실수요자 개발(민간개발)

- 주요업종 : 금속가공제품제조, 식료품제조,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등
- 개발방법 ☞ 보물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에 의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가.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보물리, 광정리 517번지 일원
- 나. 면 적 : 134,873m²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기 간 : 2008년 ~ 2010년 01월 31일

6.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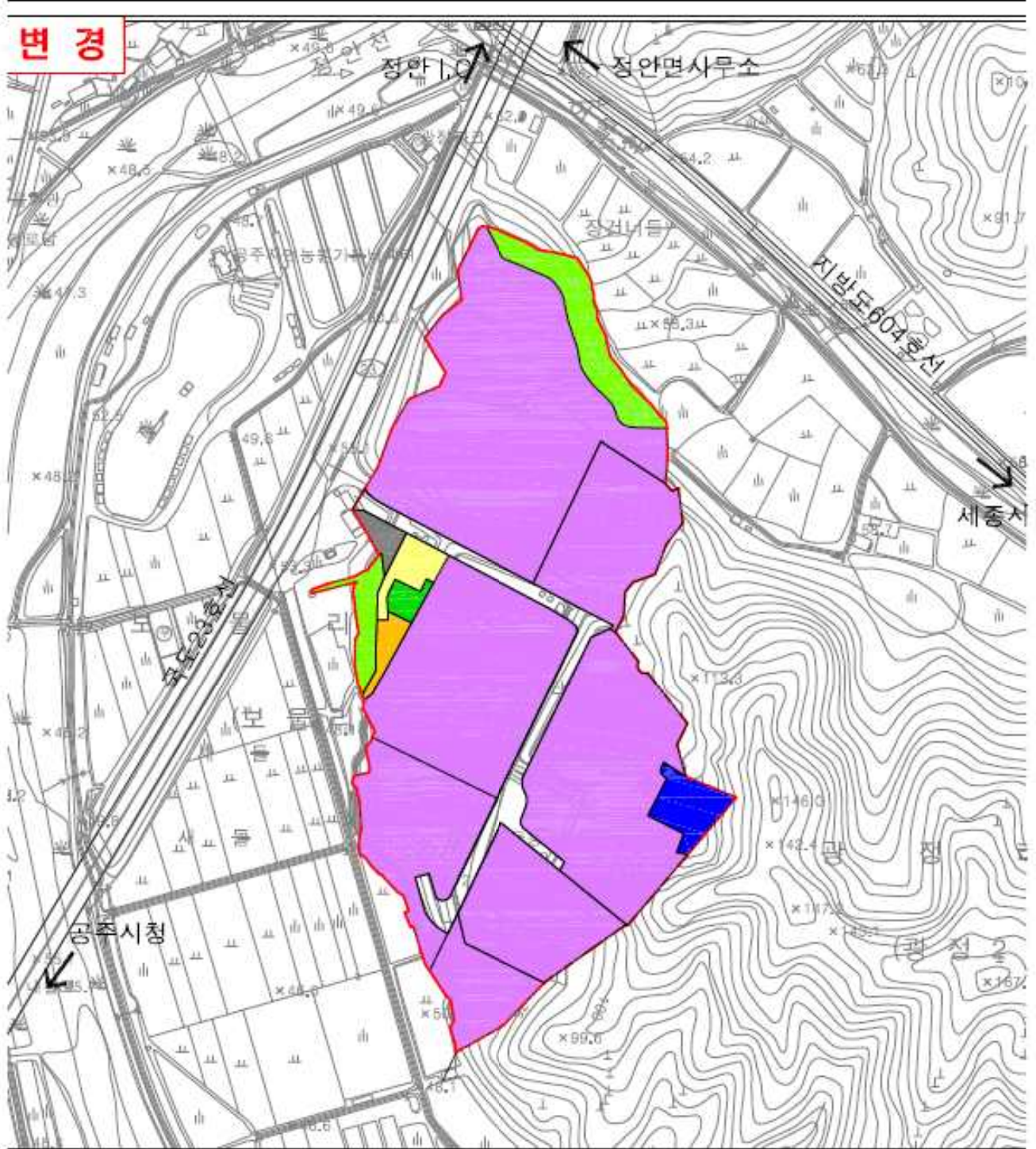
주요 유치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C10 식료품 제조업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7. 토지이용 및 업종배치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합 계	134,873.0	100.0	
산 업 시 설 용 지	113,005.4	83.8	
관 리 시 설 용 지	1,649.4	1.2	지적면적 현행화
녹 지 시 설 용 지	7,997.0	5.9	
	7,917.1	5.9	
근 린 공 원	883.0	0.6	지적면적 현행화
원 형 보 전 녹 지	803.1	0.6	
원 형 보 전 녹 지	7,114.0	3.8	
공 공 시 설 용 지	12,221.2	9.1	
도 로	7,651.1	5.7	노선변경
주 차 장	922.0	0.7	
오 · 폐수처리장	1,034.0	0.8	
배 수 지	2,614.1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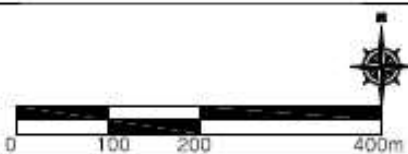


공주 보물농공단지
토지이용계획도

범

례

- | | |
|--|--|
|  구역계 |  수도공급시설 |
|  산업시설용지 |  오폐수처리장 |
|  지원시설용지 |  주차장 |
|  근린공원 |  도로 |
|  경관녹지 | |



나. 업종배치계획(변경)

구분	유치업종	면적 (㎡)	구성비 (%)	비고
	합 계	113,005.4	100.0	
산업 시설 용지	(C10) 식료품제조업	20,415.20	18.1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31,640.40	28.0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4,850.20	4.3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34,927.60	30.9	
	(C2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21,172.00	18.7	기정
	(C10) 식료품제조업 (C2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21,172.00	18.7	변경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m ²)	구 성 비(%)	비 고
합 계		134,873.0	100.0	
관리 지역	보전관리지역	-	-	
	생산관리지역	-	-	
	계획관리지역	134,873.0	100.0	

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변경)

○ 도로 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합계	3	624 652	7,651.1 7,651.1	-	-	-	1 1	85 87	852.2 852.2	2 2	539 565	6,798.9 6,798.9
중로	2	539 565	6,798.9 6,798.9	-	-	-	-	-	-	2 2	539 565	6,798.9 6,798.9
소로	1	85 87	852.2 852.2	-	-	-	1 1	85 87	852.2 852.2	-	-	-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1	12	국지 도로	249	466-10도	중로3-2	일반 도로	농공 단지	공주시 공고 제2008-1288호 (2008. 11. 26)	
기정	중로	3	2	12	국지 도로	306 316	중로3-1	527장	일반 도로	농공 단지	공주시 공고 제2008-1288호 (2008. 11. 26)	
기정	소로	2	1	8 (18) 8 (12)	국지 도로	85 87	중로3-2	523장	일반 도로	농공 단지	공주시 공고 제2008-1288호 (2008. 11. 26)	

나) 주차장(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②-1	주차장	보물리 521번지 (기정) 보물리 521-3번지 (변경)	922.0	-	922.0	공주시 공고 제2008-1288호 (2008. 11. 26)	지번 현행화

2) 공간시설

가) 공원(변경없음)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③-1	공원	근린 공원	보물리 521번지 (기정) 보물리 521-1번지 (변경)	883.0	감79.9	803.1	공주시 공고 제2008-1288호 (2008. 11. 26)	지번및지적 면적 현행화

나) 녹지(변경없음)

○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	-	-	7,114.0	-	7,114.0		
기정	③-2	녹지	경관 녹지	보물리 520번지	1,980.0	-	1,980.0	공주시 공고 제2008-1288호 (2008. 11. 26)	
기정	③-3	녹지	경관 녹지	보물리 산27번지 (기정) 광정리 322번지 (변경)	5,134.0	-	5,134.0	공주시 고시 제2010-33호 (2010. 03. 08)	지번 현행화

3) 유통 및 공급시설

가) 수도공급시설

○ 수도공급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②-4	수도 공급 시설	배수지	정안면 보물리 524번지	2,614.1	-	2,614.1	공주시 공고 제2008-1288호 (2008. 11. 26)	

4) 환경기초시설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②-3	수질 오염 방지 시설	오·폐수 처리장	보물리 521번지 (기정) 보물리 521-2번지 (변경)	1,034.0	-	1,034.0	공주시 공고 제2008-1288호 (2008. 11. 26)	지변 현행화

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 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	보물 농공단지	산업형	정안면 보물리 517번지 일원	134,873.0	-	134,873.0	공주시 공고 제2008-1288호 (2008. 11. 26)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참조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산업시설용지

○ 기정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m ²)	구성비(%)	
총계	-	-	134,873.0	100.0	산업시설용지
소계	-	-	113,005.4	83.8	
①	1	보물리·광정리 517번지 일원	34,927.6	25.9	1. 획지 3,4구획 변경 2. 획지 6구획 변경 * 면적 변경 없음
	2	보물리 518, 518-1, 518-2, 518-3번지	10,494.2	7.8	
	3	보물리 523번지	21,172.0	15.7	
	4	보물리 525번지	9,921.0	7.3	
	5	보물리 522번지	20,730.0	15.4	
	6	보물리 527번지	10,910.4	8.1	
	7	보물리 526번지	4,850.2	3.6	

4)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기정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산업시설용지		· 공업지역 내 허용 가능한 건축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공장 및 부대시설 (관련법령에서 불허하는 경우 제외)		
①-1 ~ ①-7	보물농공단지 정안면 보물리· 광정리 517번지 일원	용 도	허용용도	중분류(코드번호)	업 종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C10	식료품제조업
				C2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조업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43조)	
	용적률	150% 이하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47조)			
	높 이	4층(20m) 이하			

7. 행위의 제한

○ 보물농공단지 실시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주시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보물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 : 게재 생략
-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 : 게재 생략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행정협의회 규약 고시

지방자치법 제152조 1항에 의거,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충청산업 문화철도(보령선)의 조기착수와 국토균형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 철도를 통한 공동번영을 목적으로 하는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행정협의회 규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일

공 주 시 장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행정협의회 규약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협의회는 명칭은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행정협의회”라 한다.

제2조(목적)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의 조기착수와 국토균형 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 철도를 통한 공동번영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폭넓은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협의회는 철도노선이 경유하는 세종특별자치시, 공주시, 보령시, 부여군, 청양군 등 5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한다.

제4조(사업)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한 사전 조사용역 추진
2. 사업 설명회, 세미나 등 주민과의 소통강화

3. 중앙부처, 국회 등에 대한 공동대응 추진
4. 상생을 위한 공동 전략 연구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 관심사에 대한 정보교환 및 제반 교류 사항 등

제2장 임원

- 제5조(회장)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회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회의진행을 비롯한 회의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③ 회장은 회원들이 호선하며, 회장이 유고시에는 세종특별자치시장, 공주시장, 보령시장, 부여군수, 청양군수의 순으로 임무를 대행한다.

- 제6조(사무국) ① 협의회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은 부여군에 두며 사무국장은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부서장이 된다.
- ③ 사무국장은 협의회에서 추진하기로 결정된 사안에 한하여 집행에 관한 사항은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국장은 정기회 또는 임시회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회의

- 제7조(회의개최)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는 연 1회 희망하는 자치단체에서 개최하되, 필요시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③ 임시회는 회원들의 요청이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④ 회의안건은 회의개최 15일 전 사무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무국에서는 회의자료 및 일정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사무국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기회에 해당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을 수립하여 상정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⑥ 정기회 및 임시회는 필요시 회원들의 합의하에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의결) 협의회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록 등 작성 관리) 사무국장은 회의록 또는 회의관련 사항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협의회 안건을 사전 협의하며, 협의회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하고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실무를 협의 처리한다.

제4장 재정

제11조(경비부담) 협의회 회의의 결정사항으로 제4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각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5장 보칙

제12조(해산) 협의회는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의결을 얻어 해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여사업비의 처리는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효력발생) 본 규약은 의결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규약준용)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원 간의 협의로 정한다.

제3조(규약개정) 본 규약은 협의회 회의를 통하여 개정할 수 있다.